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성향에 대한 연구

전 태 영 · 경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문 춘 선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이 무엇인가를 의뢰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상공회의소의 상공명감에 게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우편에 의한 설문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을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조세절감액, 세무조사 가능성, 제재, 의뢰인의 중요성, 의뢰인의 공격성, 세무대리인의 경력 및 기업의 매출액과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을 포함시켰다. 회귀분석결과 모형의 결정계수는 0.229로 나타났고, 독립변수 중에서 조세절감액, 의뢰인의 중요성, 세무대리인의 경력과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주제어〉 세무대리인, 위험선호성향

I. 서론

과세제도가 부과납부제에서 신고납부제로 전환되면서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조세 마찰은 납세자의 조세불순응(Tax Noncompliance)이라는 거부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조세불순응의 대표적 형태로 조세회피(Tax Evasion)를 들 수 있는데, 조세회피는 주로 납세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으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능력 및 회계에 대한 이해정도가 부족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시간적인 제약 등의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정하고 있는데, 장부나 증빙에 의해 신고하는 대상자 중 71.6%(결정세액기준 93.1%)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신고하고 있다(국세청, 1999).

과세당국에서도 조세법에 근거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이용을 적극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국가재정수입의 원활한 확보, 조세정책의 건전화 및 세제개편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성향은 세무대리인, 의뢰인 및 과세당국의 세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뢰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의사결정시 고려하는 것과 비슷한 요소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태도를 의뢰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업무 수행시 위험선호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 요인(조세 절감액, 세무조사 가능성, 제재), 의뢰인의 속성요인(의뢰인의 중요성, 의뢰인의 위험선호성향, 응답자의 근무기간), 기타 요인(세무대리인의 경력, 매출액) 등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영향력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여 조세회피적인 태도가 지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서를 이용한 우편 survey 연구방식을 사용하였고,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세무담당직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는 달리 자체적인 세무업무 처리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1. 이론적 배경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납세자의 조세순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세순응이론을 기초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의사결정에 관련되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대효용이론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은 위험 하의 의사결정 행위의 분석을 위한 규범적 모형이다. 여기서는 합리적인 인간은 기대효용이론의 공리를 따를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은 각 행동결과의 기대값을 계산하여 기대값이 가장 큰 행동을 최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원리를 따른다. 기대효용이론은 개인이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지 제시하고 있는데, 조세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현시점의 소득이나 부를 극대화하도록 의사결정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으로 유추하면 세무대리인은 관련 변수가 납세자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효용 및 주관적 확률을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Keeney and Raiffa, 1976, p.131).

나. 예상이론

Kahneman 등(1979, pp.263-291)은 선호가 기대효용이론의 공리를 체계적으로 위반하는 선택문제를 제시하면서, 기대효용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으로 예상이론(Prospect Theory)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편집(editing)단계와 평가(evaluation)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편집단계는 제공된 대체안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으로 평가단계에서의 인식요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단계에서는 편집된 대체안을 평가하여 가장 큰 가치를 지닌 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예상이론에 따르면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개인의 의사결정은 기대효용이론에 따라 계산된 최적 상태가 아니라 단지 이득 또는 손실의 상황으로 평가된 결과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 경우 가치함수는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가치함수는 보통 이득상황에서는 원점에 대해 오목(concave)하고 손실상황에서는 원점에 대해 볼록(convex)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잠재적 이득상황일 때 의사결정자는 위험회피적 성향을 보이지만 잠재적 손실상황에서는 위험선호적 성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Chang(1984)은 조세순응행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예상이론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예상이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 기타 이론

대리이론(Agency Theory)에서의 대리관계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본인(principal)이 자신을 대리하여 기업의 운영권을 대리인(agent)에게 위임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계에서 세무대리인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차적 대리인-본인관계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서 발생하는데 양측 모두 자신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한다. 2차적 관계는 세무대리인과 세무당국의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국세청은 벌칙 등을 강화하여 1차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2차적 관계를 강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Ayres et al., 1989, pp.305-306).

저지이론(Deterrence Theory)은 어떤 행위에 대한 저지가 존재한다거나 행위자가 이런 저지가 부과될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벌금 등)과 이익(조세절감액)을 고려하여 위험선호적인 세무신고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Jackson et al., 1985, p.16).

의도이론(Intention Theory)은 태도, 의도 그리고 행위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으로서 세무대리인의 성격차이가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데,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Lewis, 1982, p.72).

2. 선행연구

세무대리인의 성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참조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Milliron 등(1988, p.84)은 조세순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안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인식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분석결과 세율과 손금항목은 감소시키되 기타 특성변수는 그대로 두는 정책방안이 가장 선호되었다.

McGill(1988)은 공인회계사들이 의뢰인에게 위험선호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함에 있어서 특정한 모형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조세절감액, 세무조사가능성, 제재, 고객의 불만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Duncan 등(1989, pp.91-105)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IRS의 세무조사확률의 경우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위험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는 세무대리인의 선택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간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분쟁에서 승소경험이 많은 세무대리인일수록 위험선호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Schisler(1994, p.139)는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험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조사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위험선호적인 의뢰인의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위험선호성향이 강한 반면, 보수적인 의뢰인과 관련된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자의 손실상황은 위험선호적인 의뢰인 속성과 결부하게되면 증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Cuccia(1994, p.41)는 의뢰인의 납세의무 이행을 조언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자신에 대한 잠재적 벌칙수준의 증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칙 및 제재가 증가하면 상업적 세무대리인(commercial tax preparers)의 세무담 감소항목을 찾기 위한 노력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오히려 노력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선표(1997, p.2)는 세무대리인이 고객에게 적극적인 세무신고 입장을 권고할 때 어떤 변수를 이용하는가를 파악하였다. 경제적 요인(잠재적인 조세절감액, 세무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 고객의 중요성)은 유의적인 관계가 있고, 제재에 대한 태도도 의사결정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환근(1998, pp.11-13)은 납세자를 위한 세무대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은 자신에 대

한 벌칙에 어떻게 반응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의뢰인 속성요인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낮은 벌칙수준일수록 위험선호적인 세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의뢰인이 중요하지 않을 때 벌칙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위험선호적인 성향의 의뢰인을 대리할수록 세무대리인은 위험선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먼저 조사대상과 연구방법을 들 수 있는데, 기존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성향을 연구함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구하였다. 본 주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비교적 자료확보가 용이한 실험적 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적 연구는 통제된 작업환경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구결과와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이 낮아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설문을 이용한 survey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여 외적타당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뢰인이 평가하는 세무대리인의 성향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측정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민감한 문제를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확한 답변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연구대상요인의 차이점을 들 수 있다. 기존연구는 납세자의 조세순응·불순응에 관한 이론에서 제시된 변수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뢰인관련 요인들을 포함시켰다. 즉 관련요소를 경제적 요인(조세절감액, 세무조사 가능성, 제재), 의뢰인의 속성요인(의뢰인의 중요성, 의뢰인의 위험선호적인 성향), 기타 요인(세무대리인의 경력)으로 재편성하여 제시하였고, 또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기업의 규모(매출액)와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을 추가로 모형에 포함시켜 이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Ⅲ. 연구의 설계

본 장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연구모형과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1. 변수의 선정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의뢰인이 평가하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으로 정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란 모호한 세무분야(grey area)에 있어서 세법에 규정된 각종 공제항목 및 관련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납세의무(세액)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위험선호성향이 지나치게 되면, 대리인은 합법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성격의 의사결정까지 고려하게 된다. 위험선호성향은 의뢰인이 추구하는 세액경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으로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억제시켜야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성향을 5단계로 하여 “성실한 세무신고에 중점을 두어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①에 표시하고 “공제항목의 적극활용으로 세액을 최대로 경감시킨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⑤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⑤에 가까울수록 위험선호 성향이 강한 세무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경제적 요인, 의뢰인의 속성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은 의뢰인의 금전적 이익·손실 즉, 소득이나 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말한다.

(가) 조세절감액

납세자들은 높은 세율에 직면하면 조세불순응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조세순응 비용이 증가할 때 납세자들은 조세불순응을 통하여 조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선호적 의사결정의 결과 나타나는 조세절감액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은 조세절감액이 증가하게 될 때 고객만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위험선호 성향을 취하게 된다. Clotfelter(1983, p.372)는 잠재

적인 조세절감액은 높은 세율과 위험선호 성향에 대해 유의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집단이 느끼고 있는 세액의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의해서 조세절감액을 측정하고자 한다. '조세절감액'에 대한 설문문항에는 세액의 절감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①(전혀 도움이 안 된다)에서 ⑤(많은 도움이 된다)까지 제시하여 5점 척도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⑤에 가까울수록 조세절감액이 많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세무조사 가능성

세무조사 가능성은 위험선호적 태도를 권고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만약 의뢰인이 세무조사를 당한다면 가산세나 벌금 등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조세절감액으로 부터 이익의 기대가치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의뢰인은 세무대리인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제재가 가해지므로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 때 세무대리인은 위험선호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Witte & Woodbury(1985, p.1), Spicer & Thomas(1982, p.241)는 세무조사 가능성과 위험선호적인 성향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이 최근 5년 동안에 받은 세무조사의 회수에 의해 세무조사 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설문문항에는 응답회사가 받은 최근 5년 동안의 세무조사 회수에 대하여 ①(0회), ②(1회) ③(2회 이상)을 제시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③에 가까울수록 세무조사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제재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의하여 독점적인 세무대리권을 부여받는 대신 고도의 직업윤리를 요청 받고 있으며,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를 받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실무에 대한 제한·자격 중지 등의 징계, 공인회계사회 및 세무사회의 윤리위원회에 의한 자격중지·자격박탈·벌금 등의 징계, 조직 내에서 행하는 자체 징계, 고객의 잠재적 손실이나 불만족에 따른 거래단절 등에 직면한다. 따라서 위험선호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제재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지한 세무대리인은 위험선호 성향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Friedland 등(1978, p.107)은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재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선호적인 의사결정수준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제재’에 대한 설문문항에는 세무대리인이 자신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처벌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하는지를 ①(전혀 고려하지 않는다)에서 ⑤(매우 많이 고려한다)까지 제시하여 5점 척도상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⑤에 가까울수록 제재를 많이 인지하는 세무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2) 의뢰인의 속성요인

(가) 의뢰인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 의뢰인의 중요성은 세무대리인의 수수료수입의 크기를 의미한다. 세무대리인이 얻게 되는 보상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의뢰인에 비해 중요한 의뢰인의 경우에 더욱 크기 때문에 의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면 세무대리인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McGill(1988)과 Reckers 등(1991, p.30)은 수수료 수입이 큰 의뢰인일수록 세무대리인은 위험선호적 태도를 취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이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Collins등(1990, pp.15-16)은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64%는 정확한 세무보고서(correct return)를 원했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minimize taxes)은 29%에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보다는 나중에 나타날지도 모를 문제를 피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이런 경향을 고려한다면, 수수료 수입이 큰 고객일수록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의 신뢰를 잃어 세무대리인의 영업기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뢰인의 중요성’에 대한 설문문항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①(10만원미만)에서 ⑤(500만원이상)까지 5단계로 분류하였는데, 금액이 클수록 의뢰인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의뢰인의 위험선호 성향

의뢰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의뢰인의 납세태도 또는 조세윤리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의뢰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어 위험선호 성향이 강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경우 위험선호적 태도를 취하게 되

고, 보수적인 의뢰인의 경우 세무대리인 또한 보수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Milliron(1988, pp.1-15)은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의뢰인의 위험선호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의뢰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대한 문항에는 세무신고와 관련한 의뢰인의 정책에 대해 ①(세무조사 위험이 있어도 세금을 적게 신고)에서 ⑤(세금은 많이 부담해도 세법의 규정에 맞게 신고)까지 제시하여 5점 척도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①에 가까울수록 위험선호적 성향이 강한 의뢰인이라 할 수 있다.

(3) 기타 요인

기타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공변량 분석에 가장 많이 도입되었고 또한 의뢰인을 통하여 조사가능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세무대리인의 경력을 선정하였다. 세무대리인의 경력은 세무대리인의 세무신고시 취하는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실무경험이 많은 세무대리인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험선호적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Jackson & Milliron(1986), Kinsey(1987)등은 위의 이론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Duncan 등(1989)의 연구에서는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세무대리인의 경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에는 세무대리인의 연령과 개업경력 그리고 당해 기업의 업무에 관련한 기간을 포함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업종, 매출액, 인원 수, 기업형태,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하였다.

2. 연구모형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적 성향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검정하는 회귀모형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PROPENSITY} = & \alpha + \beta_1\text{SAVE} + \beta_2\text{AUDIT} + \beta_3\text{SANC} + \beta_4\text{CLIENT} \\ & + \beta_5\text{RISK} + \beta_6\text{CAREER} + \beta_7\text{SUBJ} + \beta_8\text{SALES} + \varepsilon \end{aligned}$$

〈변수의 정의〉

PROPENSITY =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	CLIENT = 의뢰인의 중요성
SAVE = 조세절감액	RISK = 의뢰인의 위험선호적 성향
AUDIT = 세무조사 가능성	CAREER = 세무대리인의 경력
SANC = 제재	SUBJ = 응답자의 근무기간
SALES = 매출액	α = 상수항
β = 계수	ε = 잔차

독립변수로는 위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8개의 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그 중 세무대리인의 경력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연령과 개업경력, 그리고 해당기업의 업무에 관여한 기간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경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질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과 같은데 Cronbach's alpha 계수가 0.7802로 나타나서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

〈표1〉 변수의 신뢰성 검토

변 수 명	Cronbach' α
연 령 개업경력 업무관련기간	0.7802

독립변수 상호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변수상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가 <표2>에 제시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 Cronbach's α 는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신뢰도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측정치이다. 신뢰도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설문은 경우처럼 한가지 요인이 다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가 내적일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통계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체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통계량이 0.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이런 경우 전체항목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표2〉 독립변수 상호간의 상관관계

	CAREER	AUDIT	SAVE	CLIENT	SANC	SUBJ	RISK	SALES
CAREER	1.000							
AUDIT	.304	1.000						
SAVE	.065	-.033	1.000					
CLIENT	-.044	-.002	-.055	1.000				
SANC	.006	.044	-.131	-.044	1.000			
SUBJ	-.109	-.046	-.138	-.040	-.091	1.000		
RISK	-.165	.045	-.059	-.046	-.180	.033	1.000	
SALES	-.146	-.273	.011	.006	-.018	.133	.031	1.000

3. 가설의 설정

가.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설

(1) 조세절감액

조세절감액은 납세자(의뢰인)의 직접적인 이익의 대용치로써 조세절감액이 크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절감액은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H₁ : 세무신고시 발생하는 조세절감액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증가할 것이다.

(2) 세무조사 가능성

의뢰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추가적 비용(벌금, 가산세 등)이 발생하게 되어 기대이익은 적어지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의뢰인은 세무대리인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가능성은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과 음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H₂ : 세무조사 가능성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감소할 것이다.

(3) 제재

제재는 세무대리인의 신용과 평판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이 위험선호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증가할 제재를 인지하게 되면 위험선호 성향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조세정책에 순응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H₃ : 세무대리인 인지하는 제재수준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감소할 것이다.

나. 의뢰인의 속성에 대한 가설

(1) 의뢰인의 중요성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위험선호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보상과 위험의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ship)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중요한 고객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얻게 되는 혜택도 크지만, 위험한 결정으로 인한 사후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관계의 손실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후자의 손실은 전자의 이익보다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Collins 등(pp.15-16)의 조사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세금문제로 인해서 사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세무대리인을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대리인은 이를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소들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중요한 고객일수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H₄ : 의뢰인의 중요성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감소할 것이다.

(2) 의뢰인의 위험선호 성향

세무대리인이 보수적인 의뢰인의 업무를 수임한 경우는 위험이 따르는 위험선호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위험선호적 의뢰인의 경우는 위험선호적 태도를 취할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고객관계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어, 세무대리인은 위험선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가설을 설정하였다.

H₅ : 의뢰인이 위험선호적일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증가할 것이다.

다. 기타의 변수에 대한 가설

세무대리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경력이 많은 세무대리인은 세무당국의 행정흐름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세무실무 및 법령지식도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산된 위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력이 적은 세무대리인은 정보 및 경험의 부족으로 자신의 결정에 내포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 보수적인 경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₆ :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진다.

한편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근무경력이 많은 응답자는 세무 및 회계 업무에 대하여 숙련도가 높아져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노련한 근무자는 미묘한 사안에 내포된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도 보다 위험선호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₇ : 응답자의 근무기간이 많을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진다.

IV.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자료의 수집 결과를 제시하고, 가설검정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우편설문을 이용한 survey 연구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는 중소기업의 세무담당직원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상공명감에 개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다양하게 배분하여 무작위로 700개의 기업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를 중소기업으로 한 이유는 대기업에 비해 조세문제에 대한 자체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대다수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세무대리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조사취지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2000년 4월에 우편으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결과는 <표3>과 같은데 총 배부부수 700부중에서 136부가 회수되어 19.5%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8부는 불완전한 응답이 있어서 자료분석에 사용된 회수설문지는 128부로 전체의 18.3%에 해당된다.

<표3> 설문지 배부 및 회수결과

구 분	응답자의 수
배 부 부 수	700
회수부수(회수율)	136(19.5%)
유효부수(유효회수율)	128(18.3%)

2. 응답자에 대한 개황

조사대상기업의 개황은 <표4>와 같다. 조사대상기업의 세무업무 의뢰대상은 세무사가 50명(39.1%), 개인회계사가 41명(32.0%) 회계법인이 37개 법인(28.9%)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업이 의뢰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법인세 신고와 세무자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 기장대행 등으로 나타났다.

<표4> 조사대상 기업의 현황

구 분		응답기업수 (비율)	
세무대리인의 종류	세무사	50(39.1)	
	개인회계사	41(32.0)	
	회계법인	37(28.9)	
제공받는 서비스의 양	1 가지	22(17.2)	법인세신고 107(30.3)
	2 가지	48(37.5)	소득세신고 19(5.4)
	3 가지	14(10.9)	부가가치세신고 55(15.6)
	4 가지	20(15.6)	기장대행 46(13.0)
	5 가지 이상	24(18.8)	세무자문 94(26.6)
			기타 9(2.5)

구 분		응답기업수 (비율)
업 종	제조업	105(82.0)
	건설업	16(12.5)
	운수·보관업	4(3.1)
	기타서비스업	3(2.3)
세무대리인의 개업경력	5년 이하	23(18.0)
	5~10년 이하	49(38.3)
	10~15년 이하	30(23.4)
	15~20년 이하	21(16.4)
	20년 초과	5(3.9)
세무대리인이 업무에 관여한 기간	2년 이하	28(21.9)
	2~4년 이하	21(16.4)
	4~6년 이하	29(22.7)
	6~10년 이하	32(25.0)
	10년 초과	18(14.1)
연간 매출액	25억원 이하	34(26.6)
	25~50억원 이하	29(22.7)
	50~75억원 이하	16(12.5)
	75~100억원 이하	19(14.8)
	100억원 초과	30(23.4)
사원수	25명 이하	36(28.1)
	26~50명	42(32.8)
	51~75명	17(13.3)
	76~100명	13(10.2)
	101명 이상	20(15.6)
기업형태	개인기업	18(14.1)
	법인기업	110(85.9)
최근 5년동안 세무조사 받은 회수	전혀 받지 않았음	66(51.6)
	1회	53(41.4)
	2회 이상	9(7.0)
연간수수료	10만원 미만	1(0.8)
	10~100만원 미만	12(9.4)
	100~200만원 미만	21(16.4)
	200~500만원 미만	66(51.6)
	500만원 이상	28(21.9)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	2년 이하	23(18.0)
	2~5년 이하	43(23.6)
	5~10년 이하	36(28.1)
	10~15년 이하	14(10.9)
	15년 초과	12(9.4)

조사대상기업의 매출액은 25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초과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사원 수는 50명 이하가 78개 기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기업의 기업형태는 법인기업이 110개 기업으로 85.9%, 개인기업이 18개 기업으로 14.1%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회수는 전혀 받지 않은 기업이 66개 기업으로 51.6%, 1회 받은 기업이 53개 기업으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연간수수료는 200~500만원 미만이 66개 기업으로 51.6%, 500만원이상이 28개 기업으로 21.9%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세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 기업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세무업무에 대한 자체 해결능력이 미흡하여 상당수의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기업의 업종은 제조업이 105개 기업으로 82.0%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고 조사대상기업이 의뢰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경력은 5년~10년이 49명(38.3%), 10~15년이 30명(23.5%)으로 나타났고, 세무대리인이 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2년 이하가 28개 기업(21.9%), 2~4년이 21개 기업(16.4%), 4~6년이 29개 기업(22.7%), 6~10년이 32개 기업(25.0%), 10년 초과가 18개 기업(14.1%)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는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때 경력을 중요시하여 어느 정도의 개업경력을 지닌 세무대리인을 선호하고 있고, 일단 세무대리 계약을 맺게되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세무업무 담당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은 2년 초과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세무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고 세무대리인과의 접촉경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세무대리인의 성향을 평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분석 결과

가.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결과

종속변수인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5>에 제시되어 있는데 ⑤에 가까울수록 위험선호 성향이 강한 세무대리인이라 할 수 있다.

응답은 ③(보통)을 기준으로 위험선호 성향이 약한 ①과 ②는 33개 기업으로 25.8%를

차지하였고 위험선호 성향이 보통인 ③은 67개 기업으로 52.3%를 차지하였으며 위험선호 성향이 강한 ④와 ⑤는 28개 기업으로 21.9%를 차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이 느끼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약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5〉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	해당기업수	비율(%)
① (위험선호 성향이 매우 약함)	5	3.9
② (위험선호 성향이 약함)	28	21.9
③ (위험선호 성향이 보통임)	67	52.3
④ (위험선호 성향이 강함)	4	3.1
⑤ (위험선호 성향이 매우 강함)	24	18.8
합 계	128	100.0

나. 가설검정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6〉과 같은데 모형의 R-square는 0.229이고, 수정된 R-square는 0.177로 나타났다.

〈표6〉 회귀분석 결과

변 수 명	표준화계수	T 값	유의수준
SAVE	0.240	2.895	0.005***
AUDIT	0.045	0.534	0.595
SANC	0.147	1.766	0.080*
CLIENT	-0.156	-1.924	0.057*
RISK	-0.012	-0.146	0.884
CAREER	0.191	2.334	0.021**
SUBJ	0.210	2.512	0.013**
SALES	-0.133	-1.563	0.121

***, **, *는 각각 1%, 5%, 10%에서 유의적임

(1) 조세절감액에 대한 가설검정

회귀분석결과 변수의 유의수준이 0.005로서 조세절감액은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

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₁은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계수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살펴볼 때 조세절감액 변수가 세무대리인의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절감액이 많을수록 납세자인 의뢰인의 이익을 증가시켜 의뢰인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세무대리인은 위험선호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의뢰인의 인지도가 일치한 것으로서, 조세절감액이 세무대리인의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2)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가설검정

변수의 유의수준은 0.595로 나타나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이 위험선호적 성향은 감소한다는 가설 H₂는 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응답기업이 최근 5년 이내에 받은 세무조사의 회수는 1회 이하가 전체의 93%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세무조사 회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우리 나라의 과세제도가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육성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있어 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대기업보다 적은 회수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조사기업들은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무를 동시에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연구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적 성향은 감소한다는 가설은 유의적이었다. 그러므로 비교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세무조사 회수가 많은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을 동시에 조사하여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가설이 유의하지 않은 원인의 하나로 변수측정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은 빈도가 높을수록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변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오히려 미래에는 더 안전할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과정은 매우 복잡한 변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세무조사 가능성은 과거의 조사빈도와 무관하고, 오히려 다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흥미로운 주제

로 생각되며, 세무조사가능성을 나타내는 설득력 있는 변수의 개발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제재에 대한 가설검정

분석결과를 제재는 유의수준이 0.08로 10%의 유의수준에서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표준화계수의 부호가 설정된 가설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인지하는 제재수준이 높을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적 성향이 감소한다는 대립가설 H_3 은 수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현상으로, 세무대리인은 고객관리차원에서 의뢰인에게 제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뢰인은 세무대리인의 마음속에는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은 민감한 문제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때는, 보다 정교한 조사방법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의뢰인의 중요성에 대한 가설검정

의뢰인의 중요성은 유의수준이 0.057로 의뢰인의 중요성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 선호 성향은 감소한다는 가설 H_4 는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성향은 장기적으로 세무대리인의 고객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보이며, 의뢰인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5) 의뢰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대한 가설검정

변수의 유의수준이 0.884로 나타나, 의뢰인이 위험선호적 일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은 증가한다는 가설은 기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본 가설의 기각 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보고자 한다. 즉 우리 나라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은 회계부서가 아닌 기업의 대표자 또는 고위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의 추진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대표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직접적인 의견조율을 통하여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은 회계부서의 전문성과 권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대기업과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본 설문지의 주된 조사대상자인 중소기업 경리담당자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 시에, 의뢰인의 위험선호성향을 제시할 때 대표자의 성향이 아닌 자신의 성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응답에 권한 있는 대표자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세무대리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리직원이 아닌 권한 있는 자의 성향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의 불일치가 유의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으로 생각된다.

(6) 세무대리인의 경력에 대한 가설검정

회귀분석결과 유의수준이 0.021로서 세무대리인의 경력은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₆가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험이 많은 세무대리인이 경험이 적은 세무대리인에 비해 보다 위험선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또한 의뢰인에 대해 큰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경우, 계산된 위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위험선호적인 세무대리인을 원하는 의뢰인은 세무대리인의 경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많을수록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의 경력 변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될 연구결과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에 대한 가설검정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은 유의수준이 0.013으로 나타나 가설 H₇은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이 많아질수록, 세무업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경험이 있는 경우 모호한 상황에 내포된 위험의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위험선호 성향을 취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원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질 때 계산된 위험을 선택하여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통한 능력배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매출액에 대한 검정

추가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킨 매출액은 유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즉 매출액은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어떠한 요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세무업무를 의뢰한 기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뢰인에 의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요소인 경제적 요인(조세절감액, 세무조사 가능성, 제재), 의뢰인의 속성요인(의뢰인의 중요성, 의뢰인의 위험선호 성향), 그리고 기타 요인(세무대리인의 경력) 등의 요소를 선택하여 의뢰인의 인지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진행되었는데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을 종속변수로 하고 조세절감액, 세무조사 가능성, 제재, 의뢰인의 중요성, 의뢰인의 위험선호 성향, 세무대리인의 경력,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과 매출액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가 0.229로 나타났고, 조세절감액, 세무대리인의 경력, 응답자의 회계부서 근무기간, 의뢰인의 중요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은 조세절감액이 많을 때,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많을 때, 응답자의 근무기간이 길 때 위험선호 성향을 가지며, 의뢰인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위험선호성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잘 검토하여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에 의한 조세회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유의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과 중소기업의 신고납부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적게 실시하는 정부의 정책변수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또 변수정의의 오류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미래의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미래의 세무조사가능성은 과거의 세무조사빈도와 무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세무조사가능성을 다른 적절한 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에 관한 대립가설이 기각된 이유는 고객 확보차원에서 의뢰인에게 제재에 대한 세무대리인 자신의 입장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의뢰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유의성을 갖지 못한 이유는 우리 나라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이 기업의 대표자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업무의 추진과정에서도 대표자와 세무대리인간의 직접적인 의견조율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세무정책(대표자의 의견)을 회계부서에 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런 부류의 주제는 세무대리인, 의뢰인, 그리고 과세당국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연구할 수 있다. 각 주체들은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각으로 서 판단을 내릴 것이므로, 각 주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조사하여 그 차이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세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국세청, <http://www.nta.go.kr/0/D/index.asp>. 1999.

이선표, "납세이행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7.

이환근,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국외문헌〉

Ayres, F.L., Jackson, B.R., "An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Degree of Aggression on Tax Return Positions by Professional Tax Preparers," Working Paper(1985),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Ayres, F.L., Jackson, B.R. and Hite, P.S., "The Economic Benefits of Regulation : Evidence from Professional Tax Preparers", The Accounting Review 64 (1989), pp.300-312.

Chang, O., "Tax Avoidance Behavior : A Prospect Theory Perspective", Ph D.

- Dissertation(1984), University of Illinois.
- Clotfelter, C.T.,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1983), pp.363-373.
- Collins, J.H., Milliron, V.C., and Toy, D.R.,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hold Demand for Tax Prepar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1990), pp.9-25.
- Cuccia, A.D., "The Effects of increased Sanctions of Paid Tax Preparers : Integrating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7(1994), pp.41-66.
- Duncan, W.A., and Reckers, P.M. J.,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Selected Economic and Noneconomic Variables on Decision Making by Tax Professionals", *Advances in Taxation* 2(1989), pp. 91-105.
- Friedland, N., Maital, S. and Rutenberg, A.,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8), pp.107-116.
- Jackson, B.R. and Jones, S., "Salience of Tax Evasion Penalties versus Detection Risk",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6(1985), pp.7-17
- Jackson, B.R., Milliron, V.C.,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1986), pp.125-165.
- Kahneman, D. and Tversky, A., "Prospect Theory :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1979), pp.263-291.
- Keeney, R.L. and Raiffa, H. *Decision with Multiple Objectives : Preference and Value Tradeoffs*(1976), New York, Wiley.
- Kinsey, K., "Advocacy and Perception : The Structure of Tax Practice", Working Paper(1987), American Bar Foundation.
- Lewis, A. "The Social Psychology of Tax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1982), p.72.
- McGill, G. "The CPA's Role in Income Tax Compliance : An Empirical Study of Variability in Recommending Aggressive Tax Positions", Ph D. Dissertation (1988), Texas Tech University.
- Milliron, V. "A Conceptual Model of Factor Influencing Tax Preparers' Aggressiveness", from *Contemporary Tax Research*(1988) edited by Moriarity

- and Collins, pp.1-15.
- Milliron, V.C. and Toy, D.R. "Tax Compliance : An Investigation of Key Featur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1988), pp. 84-100.
- Reckers, P.M., Sanders, D.L., and Wyndelts, R.W.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ax Practitioner Complianc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3(1991), pp.30-46.
- Schisler, D.,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Factors Affecting Tax Preparer Aggressiveness - A Prospect Theory Approach",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1994), pp.124-139.
- Spicer, M. and Thomas, J. "Audit Probabilities and the Tax Evasion Deci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s Psychology 2(1982), pp.241-245.
- Witte, A. and Woodbury, D.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 The Case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38(1985), pp.1-13.

부록 : 설문서

※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절한 번호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대리인이란 귀사가 세무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뜻합니다.

1. 귀사는 세무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다음 중 누구로부터 조언을 얻고 있습니까?

- ① 세무사 ② 개인회계사 ③ 회계법인

2. 세무대리인의 조언은 귀사가 납부할 세액의 절약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많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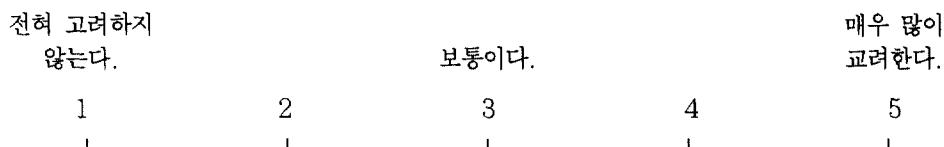
3. 귀사에게 조언하는 세무대리인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성실한 세무신고에 중점을 두고 세액을 경감시키려 하지 않는다.
(조세를 매우 많이 부담)
- ② 성실한 세무신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세액 경감을 위해 약간 노력한다.
(조세를 많이 부담)
- ③ 성실한 세무신고와 세액경감을 비슷하게 고려한다.
(조세를 보통으로 부담)
- ④ 성실한 세무신고보다는 세액경감을 더 고려한다.
(조세를 적게 부담)
- ⑤ 세법에 규정된 공제항목을 적극활용 세액을 최대한으로 경감시키고자 한다.
(조세를 매우 적게 부담)

4. 귀사는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받지 않았음 ② 1회 ③ 2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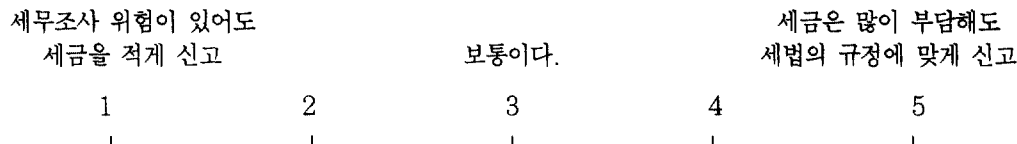
5. 세무사나 회계사는 업무상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귀사에게 조언하는 세무대리인은 의사결정시 자신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처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생각됩니까?



6. 귀사가 부담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연간 수수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만원미만 ② 10-100만원미만 ③ 100-200만원미만
④ 200-500만원미만 ⑤ 500만원이상

7. 세무신고와 관련한 귀사의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8. 귀사에게 조언하는 세무대리인의 연령은 어느 정도입니까? () 세

9. 귀사에게 조언하는 세무대리인의 개업 경력은 대략 몇 년 정도입니까? () 년

10. 현재의 세무대리인이 귀사의 업무에 관련한 기간은 대략 몇 년 정도입니까?

() 년

11. 귀사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법인세 신고 ② 소득세 신고 ③ 부가가치세 신고
④ 기장대행 ⑤ 세무자문 ⑥ 기타()

12. 귀사의 업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 | |
|----------|-------------|
| ① 제조업 | ② 전기·가스업 |
| ③ 건설업 | ④ 도소매업 |
| ⑤ 운수·보관업 | ⑥ 금융·보험·증권업 |
| ⑦ 기타서비스업 | |

13. 귀사의 99년도 매출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약() 억원

14. 귀사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약()명

15. 귀사의 기업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법인기업() 개인기업()

16. 귀하의 회계부서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년

On the Risk Propensity of Tax Practitioners in Korea

Moon Chun-Seon Professor Jun Tae-You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the influences of the chosen explanatory factors on the risk propensity of tax practitioners in Korea. The chosen factors are as follows:

- (1) Economic factors: tax savings, probability of tax audit, possible sanctions imposed on tax professionals.
- (2) Characteristics of the clients: amount of contract fees paid to tax preparers, risk propensity of the clients.
- (3) Other factors: job career of tax practitioners, sales volume of the client company, work experience of the subjects.

Questionnaires were delivered to the accounting manager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mail in April, 2000. The subjects were asked to give their responses about their own tax practitioners. So to speak, we were trying to measure the risk attitudes of tax preparers through their clients. That's partly due to the difficulty of getting honest responses directly from the tax practitioners themselves, for the risk propositions are known to have somewhat delicate natures. We could collect 128 samples from our subjects.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resulting in 0.229 as the R-square score.

Interpreting the results, four factors including tax savings, amount of contract fees paid to preparers, job careers of the tax practitioners and work experience of the subjects were prove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result means that the above variables have meaningful influences to the risk propensity of tax practitioners. Meanwhile, other variables including the probability of tax audit, sanctions against preparers, clients' risk propensity and sales volum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resent research suggests that tax practitioners usually consider several factors for the benefits of their clients faced with tax ambiguities. Accordingly, National Tax Office is advised to give full considerations on those factors which are influential on the risk propensity of tax practitioners for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Key Word〉 Tax Practitioners, Risk Propensity